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3-75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8월 28일  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회장

###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1.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,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지역봉사지도원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제3호)

나.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(안 제7조의2)

#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회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(노량진동47-2)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6, FAX : 820-1474, E-mail : fati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“지역봉사지도원”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 중 “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5조”를 “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5조”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)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
- 2.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
- 3.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
- 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.

1.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
2. 질병·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
3.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“지역봉사지도원”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.</u></p>
<p>제3조(지원대상) <u>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3조(지원대상) <u>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5조-----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제7조의2(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)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<u>1.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</u></p> <p><u>2.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</u></p>

3.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 
필요한 활동 지원
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 
인정하는 업무

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 
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
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.

1.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 
한 경우

2. 질병·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 
수행이 어려운 경우

3.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 
품위를 손상한 경우